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3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12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상훈, 송도호, 김종무,
강동길, 정재웅, 김제리,
김화숙, 박순규, 홍성룡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현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된 바, 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명문화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시내버스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안전운행 방안)</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시내버스 <u>난폭운전</u>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u>교통사고</u> 및 시내버스 내 안전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p>	<p>제11조(안전운행 방안)</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음주운전</u> 및 <u>난폭운전</u>----- -----, ----- <u>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u> ----- ----- -----.</p>